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8. 19.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8.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상황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보험료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건강보험료 가입제외자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제2조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조문 정리(안 제3조)

3) 만 나이정비에 따른 ‘만’ 표시 삭제(안 제3조제1호)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상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2014. 12. 30.)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가입제외자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험료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 안 제3조에서는 제2조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고,
 -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른 나이의 계산과 표시의 “만”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지원 및 지원 제외대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2014. 12. 30.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중 장기요양보험료의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보험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므로 조례명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4. 2. 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6.>

1. 소득: 제7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대상세대 (2024.7월 기준)			소요예산 (2024 예산)	비고
387세대			53,496천원	전액 구비
노인 348세대	장애인 34세대	한부모 5세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